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71호 2024년 11월 29일(금)

## 공 고

-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..... 2

발행 : 시 민 소 통 과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#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를 위반한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설치자에 대하여 「같은 법」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11월 29일

## 속 초 시 장

1. 공고내용 :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
2. 공고기간 : 2024. 11. 29. ~ 12. 19.(20일)
3. 처분대상 : “붙임” 참조
4. 공고방법 : 속초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, 무단점유물 부착
5. 공시송달내용
  - 가.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
  - 나.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할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- 다. 또한, 공고기간 이후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1조 및 제83조, 제99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, 무단점유물에 대해 우리 시에서 대집행(강제철거 및 폐기) 실시 후 집행비용을 청구할 예정이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문 의 처 : 속초시 친환경과(☎033-639-2331)

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1부. 끝.

## 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(단체명) : 미상

주 소 : 미상

2024년 10월 11일(속초시 공고 제2024-863호), 2024년 11월 1일(속초시 공고 제2024-942호) 속초시 장사동 산313-1번지(영랑호 생태관찰데크) 내 불법 인공 구조물을 2024년 11월 21일까지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하도록 계고서를 2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속초시 친환경과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가.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

나.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할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또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1조 및 제83조, 제99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, 행정대집행 실시 후 집행비용을 청구할 예정이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	
2024년 12월 19일 09시 ~ 18시	속초시 친환경과	환경7급	김성우	소요비용 추후청구

2024년 11월 29일

속 초 시 장

[붙임]

## - 공시송달 공고 대상 및 사진 현황 -

소재지	현장사진
<p>속초시 장사동 산313-1번지 (영랑호 생태관찰데크)</p>	

※ 처분대상 : 상기 시설물(내부 도서 포함)